

# 대법원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199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임
-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 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여 지지자 및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함

## 나. 소송경과

- 제1심: 유죄(벌금 1,500만 원)
- 원심: 항소기각

### ● 원심의 소송절차 진행 경과 📖 상고심 쟁점

- 2023. 6. 16. 국선번호인이 선정되어 2023. 6. 20. 국선번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에게는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음
- 피고인이 2023. 6. 27. 사선번호인 A, B를 선임하고, 2023. 7. 4. 사선번호인 C를 선임하였으며, 국선번호인 선정이 2023. 7. 3. 취소되었음
- 원심은 2023. 7. 6. 피고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실시하여 2023. 7. 10.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음
- 그러나 원심은 사선번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23. 7. 19.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23. 8. 25.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 원심의 유죄판단 이유 📖 상고심 쟁점 아님

-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공표된 사실은 허위임
-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음
- 피고인에게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

## 2.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번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나. 판결 결과

### ▣ 파기환송

## 다. 판단 내용

### ▣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관련 상고이유

####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①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2023. 7. 10.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할 것임
-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 나머지 상고이유(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적용 여부, 이 사건 성명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 생략
  -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함

### 3. 판결의 의의

-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함